##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10304

발의연월일: 2025. 5. 1.

발 의 자:김상훈·김선교·강대식

고동진 • 이헌승 • 김소희

박충권 • 박수영 • 김예지

이달희 • 서명옥 • 권영진

송언석 의원(13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인공지능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함에 따라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 제정되어 인공지능사업자에게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한 생성물이라는 표시를 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정보통신망에서의 인공지능기술 활용 생성물의 유통을 규제하기 위한 직접적인 규정은 미비한바,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합 성물이 급증하고 있는 실정임.

특히, 인공지능기술을 통해 화장품, 탈모치료제, 다이어트보조제 등의 효능을 광고하는 허위의 영상을 생성하여 소비자를 기만하는 사례도 발생하는 등 허위정보와 가짜뉴스의 확산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만큼 이러한 생성물에 대해서도 표시의무 부과를 통한 실효성 확보가필요함.

이에 정보제공자에게 인공지능기술로 생성한 딥페이크영상등의 표시의무를 규정하고, 해당 표시를 훼손하고 영리목적으로 제공하는 내용의 정보를 불법정보로 규정하여 유통을 금지함으로써 정보통신망에서의 인공지능 생성물 유통에 관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42조의4 및 제44조의7제1항제5호의2 신설 등).

#### 법률 제 호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2조의4(딥페이크영상등의 표시) 정보제공자 중 인공지능기술 등을 이용하여 만든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 이미지 또는 영상 등(이하 "딥페이크영상등"이라 한다)을 제공하려는 자는 해당 콘텐츠가 인공지능기술을 이용하여 생성되었다는 사실을 이용자가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시방법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콘텐츠가 예술적·창의적 표현물에 해당하거나 그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전시 또는 향유 등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방식으로 표시할 수 있다.

제44조의7제1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제6호까지"를 "제5호까지, 제5호의2, 제6호"로 한다.

5의2. 딥페이크영상등의 표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표시를 정당한 사유 없이 위조·변조·훼손 또는 제거하여 영리를 목적으 로 제공하는 내용의 정보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lt;신 설&gt;</u>	제42조의4(딥페이크영상등의 표
	시) 정보제공자 중 인공지능기
	술 등을 이용하여 만든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
	이미지 또는 영상 등(이하 "딥
	페이크영상등"이라 한다)을 제
	공하려는 자는 해당 콘텐츠가
	인공지능기술을 이용하여 생성
	되었다는 사실을 이용자가 명
	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대통
	<u>령령으로 정하는 표시방법에</u>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콘텐츠가 예술적·창의적
	표현물에 해당하거나 그 일부
	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전시 또
	는 향유 등을 저해하지 아니하
	는 방식으로 표시할 수 있다.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등) ①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	
여서는 아니 된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 <신 설>

- 6. ~ 9. (생략)
-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제1 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2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2부터 제6호의4까지의 정보에 대하여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로하여금 그 처리를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정보의 경우에는 해당 정보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자가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그 처리의 거부·정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없다.

③ ~ ⑤ (생 략)

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표시를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조·변조·훼손 또는 제거하
조・변조・훼손 또는 제거하
여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하는
내용의 정보
6. ~ 9. (현행과 같음)
②
<u>제5호까지, 제5호의2,</u>
제6호
,

③ ~ ⑤ (현행과 같음)